

의안번호	2211155
의 퇴 인	민병덕의원
회 답 일	2025.7.16.
추 계 번 호	25D350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독립운동가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현충원”으로 하려는 것임(제3호의2 신설)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독립운동가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하여 국립묘지로 승격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효창공원의 국립묘지화에 따른 관리인력의 인건비와 묘역관리 비용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효창공원은 1989년 6월 8일 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제330호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 현재 효창공원(160,924㎡)은 용산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① 독립운동가 묘역, ② 독립운동가 관련 시설, ③ 그 밖의 시설(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1] 효창공원 시설 현황: 2025.7.

구 분	묘역	독립운동가 관련 시설	그 밖의 시설(공원)
면적	12,647㎡	2,384㎡ (이봉창 의사 동상 제외)	108,272㎡
시설물	① 백범 김구 묘역 ②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 안중근 의사(가묘)] 묘역 ③ 임정요인(이동녕·차리석·조성환 선생)	① 의열사(7명의 순국선열 영정 모신 합동 사당) ② 이봉창 의사 동상	① 백범김구기념관 ② 효창운동장 ③ 원효대사 동상 ④ 반공투사위령탑 ⑤ 대한노인회 ⑥ 광장, 어린이놀이터, 자연 학습장 등
부지소유	국유지, 구유지	국유지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

자료: 용산구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2] 효창공원 관리인력 및 예산 현황: 2025.7.

구 분	독립운동가 관련 시설	묘역 및 그 밖의 시설(공원)
관리인력	2명	14명
관리예산	41백만원(구비)	1,236백만원 (국비 100백만원, 시비 973백만원, 구비 163백만원)
법적근거 (예산교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용산구청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범위, 국립묘지화를 위한 시설개선 규모, 효창공원 내 국립묘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 철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국가 지정 사적지’의 성격과 ‘근린공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국립묘지 승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